

힘센충청
대한민국의 힘

2024. 5.

2024년 충청남도 적극행정 실행계획



충청남도
[정책기획관]

|| 목 차 ||

I. 적극행정 추진현황	1
II. '24년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과제	6
III. 도지사가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10
1.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10
2.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지원	11
3.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관리	12
4.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13
5. 시군 및 공공기관 적극행정 활성화	16
IV.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17
1.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	17
2. 규제혁신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	19
3. 적극행정 공무원 인센티브	20
4.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홍보	21
V.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22
1. 사전컨설팅 활성화	22
2.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운영	24
3.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27
4.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수행 등 지원	32
VI.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35
1. 소극행정 엄정 조치	35
2.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37
3. 소극행정 점검	39
4.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9
VII.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40
1. 소속직원의 인식·행태 개선 교육 실시	40
2.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43
3.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민 참여·소통 강화	45
VIII. 추진일정 및 점검	48

〈적극행정에 대한 ‘도지사’ 의 강력한 의지〉

- ◇ “도가 전부 책임진다. 라는 자세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법과 규정을 해석하는 등 진정성 있는 책임행정을 실천하라”
- '24. 2. 5.,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인재개발원) -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행정안전부, '24.4.)」

□ 추진 필요성

- 최근 과학기술(IT 등) 발전과 기후변화 위기 등으로 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반면, 제도화된 법률과 규정은 즉각적인 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장과 정책간의 괴리 발생 사례 증가
 - 행정 처리에 있어 근거 규정이 불명확 하거나 선례가 없는 경우 현장 공무원 책임 회피 및 적극적인 의사 결정 주저
- 또한, 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소극적 단순 집행자’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적극적 문제 해결자’로 변화
 - 환경오염으로 인한 한파, 폭염, 폭우 등의 자연 재난과 산불, 범죄 등 사회재난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행정능력이 요구되는 상황
- 현장 공무원의 경우 감사, 징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기존의 관례에 의존하여 행위하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을 주저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
 - ⇒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신껏 자율과 책임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① 적극행정 제도 개선

- '22년 중앙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23년 道 실행계획에 반영('23.7.)

- ▶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 해촉) 및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실행계획에 강조·명시 → **위원회 운영 공정성 제고**
- ▶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적극행정으로 징계·소송을 당한 공무원에 대한 법률·소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강화**

-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23.7.)

-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수행 등 지원체계,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총 17개 조항으로 규정
- ▶ 「충청남도 소송사무 처리 예규」 일부개정 시행('23.7.)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 기준*을 구체화하여 공무원을 이중으로 두텁게 보호
- * 형사: 수사 종결시까지, 500만원 이내 / 민사: 소송 종결시까지, 도 소송 지급기준 준용

- 충청남도 정책기획관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운영('23.7.~)

②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 적극행정 총괄 부서장 및 유관업무 팀장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추진단' 운영
 - (구성) 정책기획관, 혁신정책·인사·서무·청렴기획·공직감찰 팀장
 - (역할)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 등 적극행정 관련 현안사항 논의·심의
 ⇨ 우수공무원 선발 시 인사·감사 등 관련부서 의견 청취 조율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 추진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하반기) 추진
 - 우수공무원 총 21명 선발, 파격적 인사 인센티브* 부여('23년 95% 이상)
 - * 특별승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근평가점, 장기교육 우선 선발 등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자, 우수공무원 당연선발을 통한 인사 인센티브 제공 및 포상금 지급

- 충청남도 규제혁신 성과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센티브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 충남형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직원 관심도 제고를 위한 노력 병행
 - 2주 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 추천' → 도 내부망 성과 공유
 - 5급·6급 발탁승진 제도 개선으로 대상범위 확대 및 성과 우수 적극행정 공무원 인사상 우대조치 확대(근평가점 최대2점 → 최대 4점)

※ 충청남도 발탁승진 제도 개선

- ▶ (선발직급) 5급 → 4급, 6급 → 5급
- ▶ (선발대상) 획기적인 법령 제·개정, 대규모 정책사업의 완수, 집단고질 민원처리 등의 업무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직렬(직류)별 승진예정인원의 승진후보자명부 법정배수 이내자
- ▶ (주요 변경사항)
 - <기준> 직렬·직급별 승진인원의 30% 이내(승진인원 4명 이상 직렬만 해당)
 - <변경> 총 승진 대상자의 30% 내외 선발(승진인원 4명 이상 시 실행)
- ※ 2023년 충청남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 1년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

- 소극행정 타파를 위한 예방·관리 체계(충청남도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23년 총 114건 소극행정 민원처리로 공직자의 능동적 행정 유도
- 도 산하 공공기관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사이버교육) 지원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시, 우수 기관 표창 포함* 실시 등
 - '25년('24년 실적)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지 적극행정 활성화 지표 신설
 - * 홍보 노력, 우수직원 선발, 안전 처리건수 등 평가, 충남문화관광재단 선정(도지사 표창)

3] 적극행정 제도활용

- 충청남도 적극행정위원회 총 5회(서면3, 대면2) 운영
 - 총19명(당연직 4명, 위촉직 15명) ※ 행정부지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부위원장)
 - 2023년 충청남도 적극행정 중점과제 및 실행계획,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상·하반기),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의 건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시, 적극행정위원 활용 발표심사

○ 적극행정위원회 현안처리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직권유예의 건」 요청 심의('23.7.)

- 건설법인 지방세 직권유예 안건에 대하여 권고사항*을 전제로 가결

* 직권유예 대상 구체적 기준 선정, 건설법인 피해 규모에 대한 자료 조사 실시

⇒ 중소건설법인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17개 법인 세무조사 유예

▶ (사례1) '22년 매출액 3,522백만원 → '23년 0원으로 매출 급감한 A 기업 지방세 세무조사 직권유예, 세무조사 추진에 따른 일시적 자금압박 가중을 방지

▶ (사례2) 집중호우로 표고하우스 8동 침수되어 복구에 경황없는 B 기업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청이 가능함을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내, 신청서 수령

○ 충청남도 공무원(시·군 포함)의 능동적인 업무 추진 및 사후 보호를 위해 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 제도 적극 운영('23년 75건 처리)

▶ (사례1) 지장물(KT통신관로) 이설비 부담 주체 및 점용미허가 지장물 강제집행 가능여부 검토 → 이설비 사업시행자 부담 타당, 지장물 강제집행 가능

▶ (사례2) 폭우로 인해 기성검사 완료된 공사용 가도가 붕괴 시, 가도 재설치 비용 예산반영 가능여부 검토 → 道(발주기관) 비용 부담 타당

4] 적극행정 문화확산

○ '23년 충남 적극행정 교육 추진('23.9.12./대회의실/김선태 주무관)

- 적극행정 제도, 충주시 SNS 우수사례로 보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 道 본청 공무원 대상, 찾아와 듣고 싶은 교육으로 운영 추진

※ 道 행정부지사 참석 인사말씀

○ 적극행정 On, 도 홈페이지, 공문서 등을 통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 상·하반기 우수공무원 선발시 카드뉴스 제작을 통해 시각적 홍보 추진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터뷰 영상 최초 제작('23년) 적극 홍보

- 영상물 제작을 통해 충청남도 우수공무원 선발에 대한 영예성 및 대상직원 자긍심 고취 → 쏘직원 대상 홍보(월례조회, EV 홍보) 추진

- 2024년 월례조회 및 적극행정 교육시, 관련 영상 적극 활용

5]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 창출

○ 2023년 충청남도 적극행정 중점과제 총 5건 선정 및 관리

중점과제	주요내용 및 추진결과
신도시 지역갈등 해소, 전국 유일 협치기구 설립추진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포신도시 효율적 도시관리 및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하천 체계적 관리, 자동크린넷 운영 등 녹색도시환경 조성 ⇒ 전국 최초 사례로 홍성군과 예산군으로 양분된 내포신도시 행정을 일원화 하여 통합관리 추진('23.4월)
기업친화적 법인세무조사 추진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최초 도·시·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전면 시행, 건설업·특별재난지역 기업(130개사) 등 세무조사 유예 실시 ⇒ 조사시기 선택제 등 기업 만족도 설문결과(만족 98.5%)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기여에 자진신고율 증가(65.9%, 4.0%p↑)
전국 산업폐기물 처리 문제 해법 선도적 마련 (추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최초 산업폐기물 공공처리(충남폐기물관리공사 설립 및 폐기물 매립장 설치) 추진,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제도개선 추진 ⇒ 산업폐기물 공공처리 추진근거 마련 등('23.1.~), 반입폐기물 세금부과 및 민간폐기물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관련 국회발의
발전소 주변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선 (추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소 주변지역법 시행령」 및 우대지침(발전5사)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발전사업자 공사·용역 계약기준 변경 및 지역기업 참여확대를 위한 우대 배점 신설·강화 관련 ⇒ 도·시·군·발전3사 업무협약 및 유관 광역단체(인천, 경남, 강원 등) 협의 추진했으나, 산자부 수용 곤란 입장. 향후 중앙정부 의견 대응논리 개발 및 국민 공감대 확산 추진 노력
도내 유통 농수산물 먹거리 안정성 확보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방사능 검사 확대 운영 등 ⇒ 수산물 중심의 방사능 862건 모니터링 실시 및 도내 로컬푸드 129건에 대해 350종 안정성 검사 추진(부적합 농산물 6건 유통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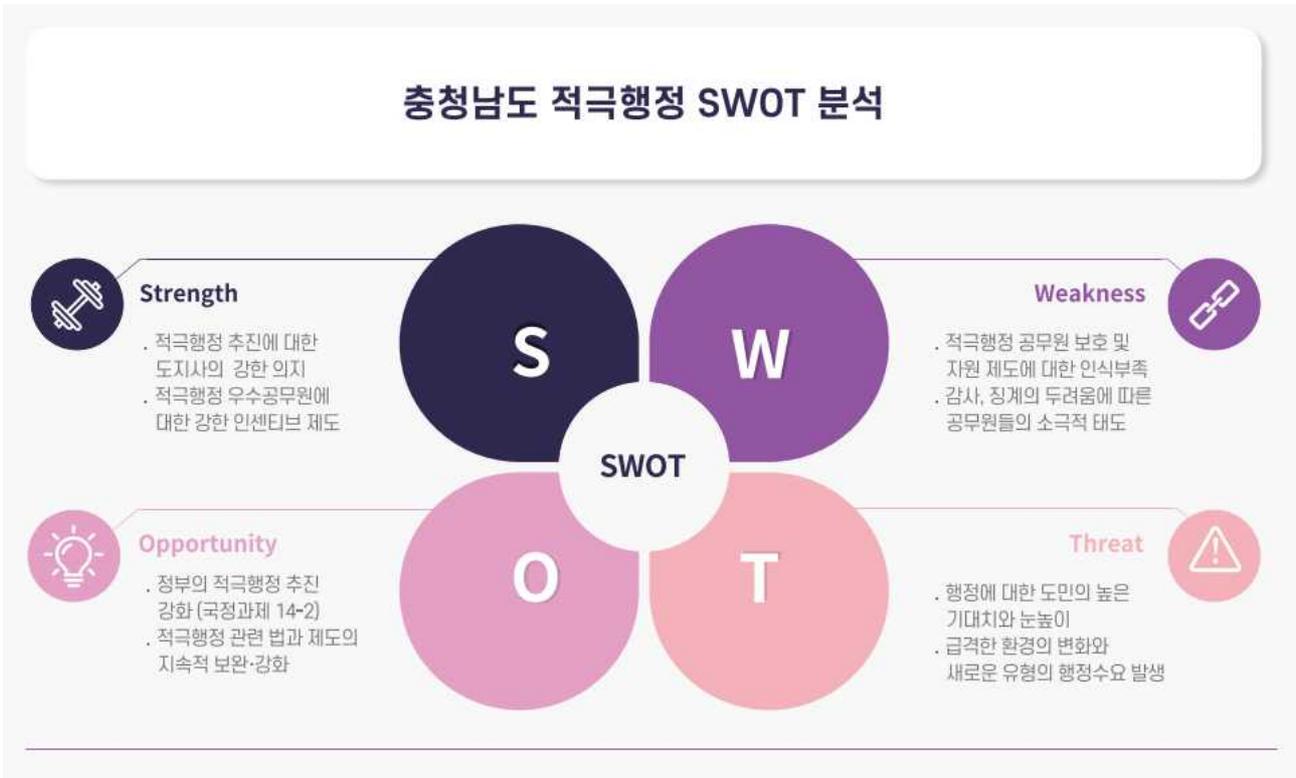
3 반성 및 평가

- (선발절차·인원) 그동안 간소화된 절차(심사)와 유연한 선정기준을 적용, 적극행정 사례의 질보다 적극행정 공무원수 발굴에 집중
 - 선정된 우수사례(공무원)에 대한 영예성 저하 및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근평가점, 교육선발가점 등)로 인사·조직 운영에 부담 초래
 - 또한, 선발 과정(상·하반기 우수공무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개별운영으로 업무추진상 비효율 초래 및 우수사례가 사장되는 경우 발생
- (수혜자 관심도) 우수공무원 등 선정과정에 도민·직원 관심도 저하

1

적극행정 추진 여건

□ 적극행정 추진 여건 SWOT 분석



□ 적극행정 중점 개선방향

누구나 공감하는 ‘질 높은 적극행정 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적극행정을 통한 ‘힘센 충남’ 구현에 기여코자 함.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검증 강화】

- 적극행정 우수사례(공무원) 선발과 道·중앙 경진대회 절차 일원화
 - 토론형 심사, 지휘부 심사를 추가하여 적절한 사례가 선정되도록 추진

【엄선된 우수성과 파격적 혜택 제공】

-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우수한 성과를 선별하여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 적극행정 고성과자에 대한 영예성 제고
- 사례 선정 시, 다각화된 홍보를 통해 도민·직원이 의견 반영 추진

□ 추진 체계도

비전

적극행정의 실현, 힘센충남의 시작

목표

도민이 체감하는 충청남도 적극행정 실현

추진
전략
및
과제

도지사가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 ①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 ②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지원
- ③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관리
- ④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⑤ 시군 및 공공기관 적극행정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 ①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
- ② 규제혁신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
- ③ 적극행정 공무원 인센티브
- ④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홍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 ① 사전 컨설팅 활성화
- ②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 제도 운영
- ③ 적극행정 면책 등 활성화
- ④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수행 등 지원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 ① 소극행정 엄정 조치
- ②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③ 소극행정 점검
- ④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 ① 충청남도 쏠직원 대상 적극행정 인식 개선 교육
- ②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 ③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민 참여 강화

□ 추진전략

도지사가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 5개 세부 과제 >

-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지원부서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시군 및 공공기관 적극행정 활성화, 적극행정 중점과제·실행계획 수립
- 행정포털, 청사 전자 게시판을 활용하여 의견제시, 면책건의 제도 적극 홍보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 4개 세부 과제 >

- 적극행정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낸 우수사례 및 공무원을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향상
- 성과 위주의 역동적 조직 운영을 위한 발탁승진제도 대폭 확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 4개 세부 과제 >

-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경감하여 감사·징계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
-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적극행정 면책 제도,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수행 지원 제도 등 운영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 4개 세부 과제 >

-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소극행정을 점검·엄정 조치하여 경각심 부여
- 소극행정을 예방할 수 있도록 소극행정의 개념, 유형별 비위 및 처리기준 등을 포함한 홍보자료를 제작·배포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 3개 세부 과제 >

- 충청남도 직원(시군, 공공기관 포함)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시행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외부적으로, 적극행정 도민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도와 일반 도민을 연결하는 중간조직으로 활용하여 도민 참여 증진

□ 중점 개선사항

충청남도 적극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 발굴·반영

구 분	2023년	2024년 개선
선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우수공무원), 하반기(우수공무원+우수사례 경진대회) 개별 운영 · 상·하반기 우수공무원 선발자 도·중앙 경진대회 참여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사례(공무원) 선발과 도·중앙 경진대회 절차 일원화 - 우수사례(공무원) 선발 과정을 경진대회의 예비심사 성격 운영
선정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공무원* 및 경진대회** 선정 심사위원, 절차 별도 운영 * 적극행정추진단서면심사→직원투표 ** 서면심사→직원·도민투표→전문가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행정추진단 심사를 토론형으로 진행하여 검증강화 ▶ 전문가 심사+지휘부 심사* 추가 * 지휘부 공무원(기조실장 등) 5명 이내 ▶ 도민투표에 범도민서포터즈 참여
선정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공무원 선발시 동 등급 인센티브* 이상 부여 * 근평가점(0.5점), 장기교육훈련 선발,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은·동 등급 외에 '입선*'을 신설하여 우수사례는 폭넓게 선정하고 파격적 인센티브는 엄선 * 특별휴가 1일 부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과정 비공개 ·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문가 심사(발표심사)를 IPTV로 송출 ▶ 경진대회 당일 시상 진행



‘질 높은 적극행정’ 사례 발굴, 적극행정을 통한 ‘힘센충남’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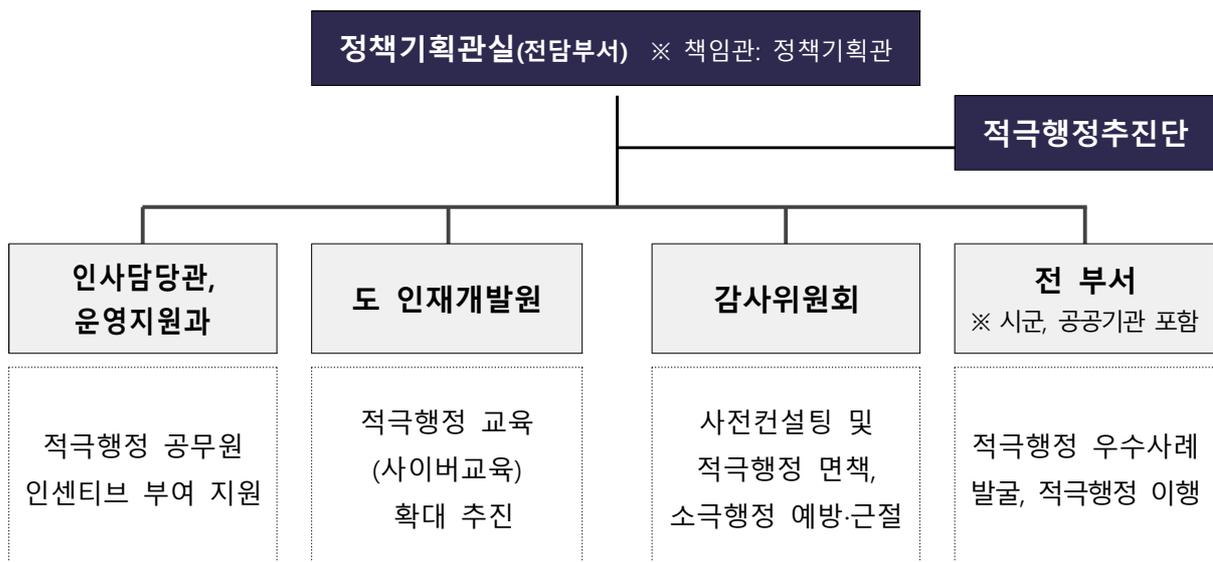
1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 추진체계 구축

- (전담부서 운영)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을 전담부서로, ‘정책기획관’을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 선발 등 관련 업무 추진 총괄
 - 시·군 및 道 공공기관 적극행정 추진실태 파악 및 업무 지원
 - (협조체계 구축) 적극행정 관련 부서(인사담당관, 운영지원과,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와의 역할 분담 등 협조 체계 구축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적극행정 이행, 적극행정공무원 면책 등에 있어 道, 시·군, 공공기관이 관련 사항 적시 공유
 - 적극행정 공무원 추천자의 실적 등을 적절히 검증하기 위해 관련 부서 팀장간 협업체계인 ‘적극행정 추진단*’ 구성·운영
- * 정책기획관(단장), 혁신정책팀장(부단장), 인사, 서무, 청렴기획, 공직감찰팀장 등 6명

< 충청남도 적극행정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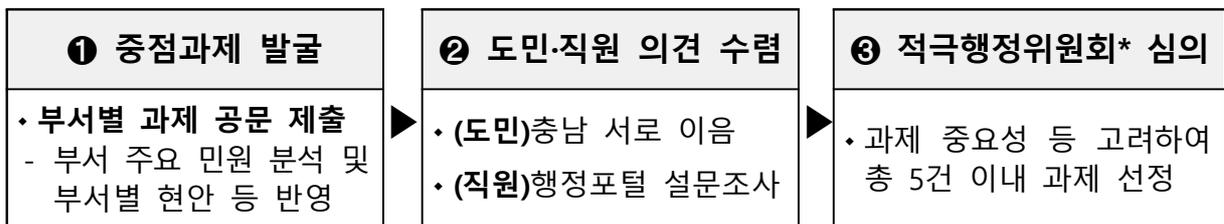
(개선) 전년 대비 신속한 과제선정 → 속도감 있는 충남도정 추진력 확보

□ 선정 개요

- (목적) 도민 체감형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에 도민·직원이 직접 참여 하여 향후 추진 사업(정책) 동력 확보 및 정책에 대한 체감도 향상

* 중점과제는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의미

- (선정절차)



*총 19명(위원장:행정부지사) 구성,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기능

- (선정기준) 도민 편익 제고 및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과제

- ✓ 기존 업무 추진성과가 미흡했거나 장기 미해결된 과제
- ✓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한 과제 혹은 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과제
- ✓ 기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등 해소가 필요한 과제

- 경제 회복,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한 과제
- 과제의 중요성 · 시급성 · 적정성 · 난이도 · 파급효과 등 종합적 고려

□ 지원 사항

- 2024년 충청남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반영, 추진 실적 등 관리
-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한 의사 결정 지원, 적극행정 우수사례(공무원) 선발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 우대 등

□ 추진 계획

- 제1차 적극행정 심의 위원회 안건상정 및 심의·의결을 통해 2024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최종 선정('24.5월)

①실과 접수 → ②직원·도민투표 → ③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 ④최종선정

[개선] 2024년 중점 개선사항 반영 → ①우수사례(공무원) 선발 개선(절차, 심사)
②인사 인센티브 확대 ③수요자 맞춤형 직무교육 ④우수성과 홍보 강화 등

□ 실행계획 수립

- (근거) 「지방공무원법」 및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 (방향)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및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계획」을 반영하여 도에 맞게 작성
- (절차) ①정책기획관(전담부서) 초안 작성 → ②핵심 과제 담당부서* 의견수렴 → ③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 ④전 부서 및 공공기관 배포
*인사담당관, 운영지원과,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등
- (주요내용)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5대 분야 20개 과제'추진

5대 분야
도지사가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추진방향
■ 적극행정의 기반을 견고히 하여 업무 추진의 동력 확보
■ 적극행정-성과-보상의 연결을 통해 소속 공무원 등의 의욕 고취
■ 적극행정에 따른 감사 및 징계에 대한 부담 경감
■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공무원들의 행태 변화 유도
■ 적극행정 추진과정에 직원과 도민의 참여 강화

□ 추진사항 환류

- 실행계획내 핵심과제 이행 상황 분기별 점검 ※ 필요시 수시점검
 - 도 관련부서와의 수시 소통(서면, 회의 등)을 통한 핵심과제 추진 공유
 - 시·군 및 공공기관 대상 서면 점검 및 자체 실행계획 제출 요청

[개선]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면책제도, 의견제시의 건 홍보
(E/V, 월례조회 및 교육추진시, 전자게시판 등 활용 홍보) 강화, 운영매뉴얼 정비

□ **구성 현황**

- (인원) 총 19명(당연직 4, 위촉직 15) ※ 간사: 정책기획관
 - 당연직: 행정부지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부위원장), 자치안전실장, 감사위원장
 - 위촉직: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남 9, 여 6) ※ 1기 인원(11명) 대비 4명 증가
 - ↳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 시 해촉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제조(위원 해촉) 도지사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망,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임기) '23. 1. 1. ~ '25. 12. 31.(3년 간, 1회 연임 가능)
- (대우) 무보수 명예직(회의 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기능) 적극행정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심의·의결

□ **운영 방법**

- (시기)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5월)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공무원) 선정(6월, 8월) 등 개최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정기개최
 - 의견제시, 면책 건의 등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수시 개최
 - (방식)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개최
 - *성별 고려, 1/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 운영
 - 대면회의 원칙,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진행
 - 2개 이상 기관이 관련된 중대 현안 등*을 심의하는 경우 합동회의 개최 가능
- * ①타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 ②타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 ③타 기관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등

○ (심의·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중점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위원장이 자문한 사항
- 공무원이 인가·허가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위원회에 의사결정·처리방향 등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 건의에 대한 사항
- 적극행정으로 징계·소송을 당한 공무원에 대한 법률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의무화, 지원 대상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
-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은 내·외부 업무망 공개, 정보공개법 등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비공개

□ 기타 사항

- (적정성 검토) 적극행정책임관은 사전에 안건의 중요성·시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안건 부의, 감사회피 등 수단으로 악용 방지
- (공공기관 대행) 자체 적극행정위원회가 없어 적극행정 추진 사각 지대에 놓인 도 공공기관에 한하여 적극행정 안건을 위임·처리
- 자체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대행 불필요
- 지방공공기관의 적극행정 면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갖추어져 있는 지자체의 경우,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집행대행 불필요
- (전문성 제고) 제2기 적극행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기후·환경, 건설·교통, 법률·교육, 보건·복지 등 8개 분야를 나누어 구성·운영

합계	기후·환경	건설·교통	법률·교육	보건·복지	경제·산업	청년	농업·해양	회계·감사
15명	1	4	2	2	1	2	1	2

- 전문 분야의 위원을 회의 시 가능한 한 필수로 지정하여 심의·의결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시 보다 전문성 있는 분석·의견이 필요한 경우 도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전문가 의견 청취

*도 정책자문위원회 : 12개 분과, 149명

- (공정성 제고)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소속직원 및 도민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공정성 제고 방안 추진
 -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등 중요한 사안인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또는 의견 제출 요구 가능
 - 위원회 회의 시 특정 위원이 안건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제척·기피·회피
 - ※ 안건과 공무상 연관성이 있더라도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촉 가능(예: 업무 소관 실국장 등)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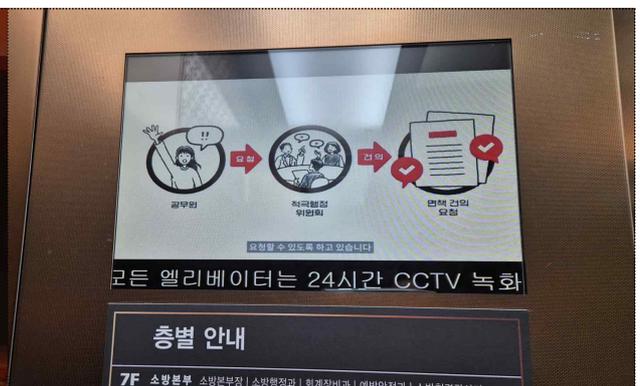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홍보 강화

- '23년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 및 면책 건의 제도 이용 1건
 -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직권유예'의 건(23.7.26)
 - ⇒ 활용도 저조, 적극행정위원회 역할에 대한 직원 인식 제고 필요
- 월례조회 영상 상영 및 타지자체 차별화된(ex0 명함) 방법으로 제도 홍보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매뉴얼 정비 및 도, 시·군, 공공기관에 공유·배포



< 2월 직원 월례모임 시 >



< 도 청사 내 E/V 홍보(24.2~3월) >

(개선) 道의 적극행정 총괄기관 역할 강화 → ①도, 시·군, 공공기관 합동 적극행정 교육 추진 ②공공기관 요청 시 방문 및 서면컨설팅 지원

□ 추진 현황

- (시·군) 자체적 적극행정 업무 추진중, 운영 현황 및 포상 등은 상이
- (공공기관) 13개 기관 운영규정 마련 및 적극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 활용) 운영
 - *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미추진
- 실행계획 수립(4개기관), 우수공무원 선발(6개기관), 의견제시건(3개기관) 추진
-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제도, 자체 적극행정 교육 등은 미흡

□ 추진 방향

-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업무(우수공무원선발, 의견제시의견, 교육 등) 관련 문의 요청시 기관 방문 및 서면 컨설팅 추진
 - 공공기관별 자체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등 적극행정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내부규정 정비 등 독려
- 그동안 道 직원 대상으로 추진했던 적극행정 집합교육을 시·군 및 공공기관 직원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추진('24. 2. 21. 기추진)
 - ⇒ 시·군 및 공공기관 추진현황 점검을 통해 기관별 추진사항을 적시 공유하고 2024년 도의 적극행정 업무 개선사항 알림 추진

□ 추진 사항

- (우수사례 경진대회) 도 및 시·군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 우수사례 선정을 통한 도지사 표창 지급
 - ※ 시·군 및 공공기관 선정자는 자체 적극행정 공무원(직원) 선발 등 권고
- (기관 포상)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선도적으로 활동한 우수기관 선정·포상
 - 6개 기관 내외 도지사 기관표창 수여
 - 시·군 및 공공기관 업무 경감을 위해 행안부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계획」 내 평가지표와 연계·활용이 가능하도록 설정
 - ※ 홍보 노력도, 우수공무원 선발 여부, 기관 대표 우수사례, 적극행정 자체 시책 등

IV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1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

[개선] ① 기존 각각 추진해온 **도우수공무원 선발과 도경진대회 절차 일원화, 도와 시군(공공기관 포함)을 그룹별로 구분하여 심사·선발**

- 우수사례 선정(예선) → 경진대회(본선)을 모두 거쳐 **도적극행정 공무원 선발**



※ 최종 선발된 도 적극행정 공무원(우수사례) 중 상위 순위자는 중앙 경진대회 추천

② 부서별 적극행정·혁신·규제개혁 경진대회 등 참가 현황을 분석하여 우수부서 선정 및 포상·홍보 추진 검토(24.12월)

③ 전문가 발표심사 시 IPTV로 생중계 및 당일 시상식 추진

⇒ 누구나 공감하는 '질 높은 적극행정 사례' 가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적극행정을 통한 '힘센 충남' 구현에 기여

□ 선발개요

- (목적) 적극행정으로 우수 성과를 달성한 사례(공무원)을 선정 격려함으로써 활력있고 진취적인 공직문화 조성
- (근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
- (대상) 도, 시군, 공공기관 **소** 직원 (소방, 공무원, 임기제, 파견직원 등 포함)
- (절차) 우수사례 선정(6월) → 도 경진대회를 통한 최종 선발(8월)
- (선발규모) 20명 내외(시군, 공공기관 선정인원 미포함)
 - 도와 시군·공공기관 우수사례(자)를 분리 선발 ※ 선발규모 추후 확정
- (공적기간) 2023. 7월 ~ 2024. 6월(1년간)

□ 선발 및 포상

○ (선발절차)

구 분	내 용	도	시·군 등
우수사례 선정 (6월)	접수기간	~ 5월말	~ 6월초
	예선심사	① 적극행정추진단(70%) ② 직원투표(30%)	적극행정추진단(100%)
	결정사항	① 경진대회 참가 대상 ② 인센티브 입선 등급	경진대회 참가 대상
우수사례 경진대회 (7~8월)	본선심사	도민투표(30%)	도민투표(30%)
		지휘부심사(30%)	-
		전문가심사(40%) *발표	전문가심사(70%) *발표
	최종결정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 입상 등급 확정 및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 입상 등급 확정 및 기관별 인센티브 부여 협조

- (선발기준) 담당자의 적극성, 성과의 국민체감도, 과제의 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포상) 적극행정 공무원 등급 기준에 따라 금·은·동·입선^{신설}으로 구분하고 대상자의 희망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인센티브 부여

《 최근 3년간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현황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선발인원	34명	35명	21명	*비율 = 파격혜택*/선발인원
파격혜택(비율)	32명(94%)	33명(94%)	20명(95%)	

* ①특별승급 ②근평가점 ③성과금 최고등급 ④교육 우선선발 (특별승진 사례는 없음)

(개선) 道도민 체감도와 파급효과가 크지만 실행 난이도가 높은 규제혁신 유공공무원을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별도 선발하고 인센티브 부여

□ **선발개요**

- (목적) 중앙 규제(법령 및 제도 개선) 개선 과제 발굴 우수사례 및 도, 시·군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 국민불편 해결 등 성과를 창출한 사례들을 발굴하여 우수사례 공유·확산
- (대상) 도 및 시군 전 직원
- (절차) 서면심사 → 경진대회 개최 → 우수사례 시상 및 인센티브 부여
- (선발규모) 10명(중앙 규제 개선과제발굴 5명, 도·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5명)

□ **선발 및 포상**

- (선발기준 등)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선발 분야		세부 내용
① 중앙부처 규제개선 과제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정부 추진과제(일자리 창출, 기업의 지방이전 등 국정아젠다 분야) ▶ 공통 규제(산업단지 입주요건 변경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 지자체 공통 숙원과제) ▶ 지역경제 활력제고, 기업애로 해소, 생활불편 해결 과제 등
② 도·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법규 및 자체 제도 개선(인·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 기업 영업환경 개선, 국민 편의 제고 등) ▶ 소극행정·관행 행태규제 개선, 유연한 법령해석 등 ▶ 사회적 약자 경제활동 장려, 협업·갈등 조정 등 사회 통합 강화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중복 심의, 인허가 처리 지연, 과도한 요금 부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애로 등이 해결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사례

- (포상) 적극행정 공무원 등급 기준에 따라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자(도 공무원)를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센티브 부여

(개선) 금·은·동 외에 '입선' 등급 신설로 우수사례는 폭넓게 발굴하고, 파격적 인센티브는 엄선된 사례만 부여하여 선발가치 제고

□ 인센티브 세부 사항

- (대상)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등
- (등급 기준) 공적내용을 고려하여 금·은·동·입선 4가지로 구분 부여

등급	선정내용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관련 「상훈법」에 따라 훈포장을 받은 자 ■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관련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자
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관련 '장관 표창'을 받은 자 ■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관련 道 경진대회 최우수상 이상으로 입상한 자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관련 道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자 ■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자
입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등급 외 道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자

※ 道경진대회 입상 부공적자는 주공적자 아래 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부공적자 1인 한함)

- (인센티브 유형) 총 9종 운영 ※ 파격적 인센티브 5종 포함
- '23년 우수공무원 21명 중 20명(95%)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인센티브 종류	등급				대상 직급	부여가능 규모
	금	은	동	입선		
특별승진	○	X	X	X	4급 이하	초과현원 인정
특별승급	○	X	X	X	6급 이하등	-
성과상여금 등 최고등급	○	○	○	X	모든 직급	최대 S등급
근평 가점 부여	2점	1점	0.5점	X	5급 이하	최대 2점
장기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장기교육	가점	가점	X	모든 직급	선발인원 내
근속승진 기간 단축	최대1년	최대6월	X	X	7급 이하	-
대우공무원 근무기간 단축	최대1년	최대6월	X	X	5급 이하	-
특별휴가	최대5일	최대3일	최대2일	최대1일	모든 직급	최대 5일
희망부서 전보	○	○	○	X	5급 이하	선발인원 내

- (부여 절차) 우수공무원 등급, 개인희망, 인사여건을 고려하여 부여
 -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예선) → 사례 中 우수한 성과는 경진대회(본선) 참가
 - ※ 그 외 사례는 입선등급 부여 → 경진대회 추진후 수상 결과에 따라 등급 부여

정책기획관	적극행정위원회	인사위원회 및 인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공무원의 희망 인센티브 조사(등급에 따라 택 1) ※ 입선등급 특별휴가 일괄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공무원 등급 및 인센티브 등 우대조치 심의·의결 • 인사위원회에 우대조치 의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우수공무원 성과, 인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 부여

※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결정 후,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은 차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시, 근평 가점은 다음 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반영, 기타 인센티브는 1년 이내 사용

- (기타 사항) 특별휴가 지급

4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홍보

□ 발탁승진

- (목적) 경직된 성과평가 구조를 보완하고, 우수 성과자에게 승진이라는 보상을 부여하여 충남도 조직의 역동성을 강화, 적극행정 환경 조성
- (시기) 정기인사 및 수시인사 시
- (선발직급) 직렬별 4·5급 ※ 도 내부망(행정포털)을 통한 공개 모집

구분	주요내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진 예정 총인원의 30% 내외에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미선발
선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진후보자 법정배수 이내자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정 공약사업, 역점과제 등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하여 추천된 공무원 - 획기적인 법령 제·개정, 대규모 정책사업의 완수, 집단·고질민원 처리 등 성공적인 업무수행 유공 - 국·도정 철학에 부합하며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 창의적인 업무개선 등을 통해 행정발전에 기여 - 양성평등 고려,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다자녀 출산·양육자 우대 - 기타 업무추진실적이 우수하여 추천된 공무원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모집 → 실국장 추천 → 공개검증(직원 및 노조 의견수렴) → 실국장토론회 → 심사·선발

□ 성과공유(확산)

- (공유·확산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홍보자료 제작·배포,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 연말 적극행정 공무원 인터뷰 영상 제작하여 영예성 제고

□ 제도개요

- (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충청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
- (목적) 공무원이 감사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타당성을 검토, 업무추진 해법 제시
- (전담기관) 도 감사위원회 컨설팅감사팀(총 4명)
- (적용대상)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 제2조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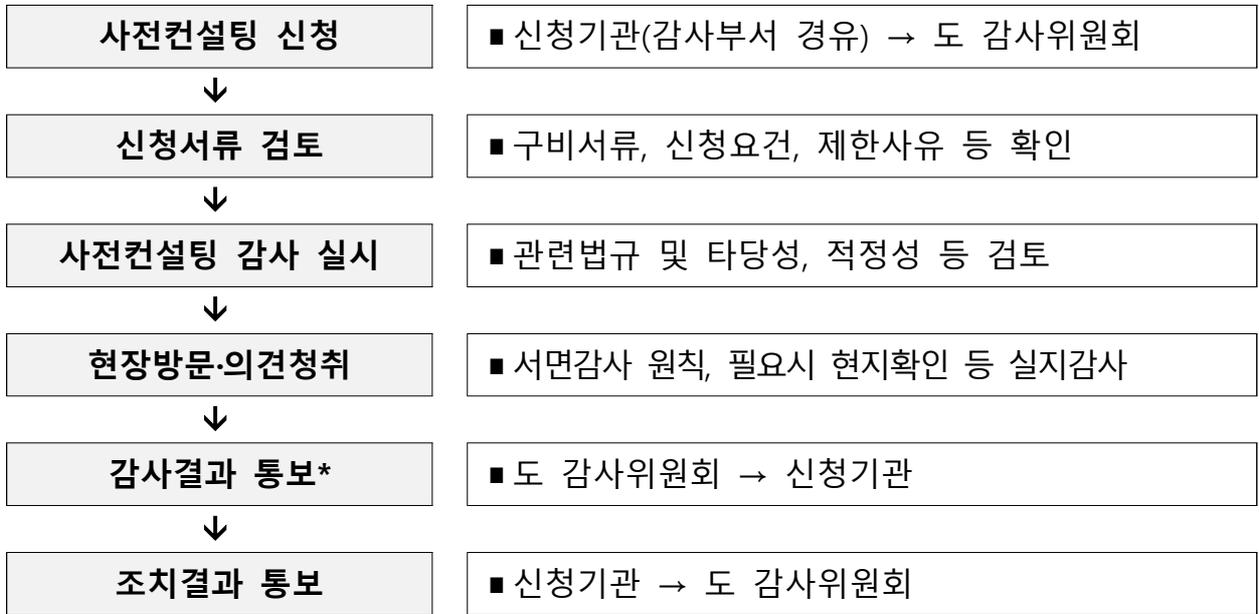
*①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②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③도지사의 지도·감독 또는 도비를 보조받는 단체·기관, ④시·군, 시·군 소속 기관, 의회사무부서

- (신청인)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
- (대상업무) 적극행정과 관련된 모든 업무 추진 사항
 - ▶ <컨설팅 범위> ①업무 추진시 절차위반 등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②업무 추진 이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있는 경우
③모호한 관계법령, 규정 등의 해석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업무추진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④그 밖에 감사대상기관에서 사전 컨설팅 감사가 필요한 경우
 - ▶ <제외대상> ①관계 법령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 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 컨설팅감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유권해석 사례 파악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
③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④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조사가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⑤각종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 또는 신청기관의 내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등 사전 컨설팅감사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충청남도 사전 컨설팅 감사 처리실적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처리건수(건)	72	83	71	60	75

○ (추진절차)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통보,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적극행정위원회 자문) 접수된 사안이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 필요시 감사위원장이 적극행정위원회에 자문 가능
 - (효력)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감사단계), 징계 등 면제(징계단계)
- *^①사안이 동일, ^②사전컨설팅 시 충분히 정보를 제공, ^③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활성화 방안

- (제도 안내) 도 전부서, 시군, 공공기관 대상 ‘2024년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계획 알림’ 안내
- (수요자중심 운영)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분기별 추진, 사안별 수시 추진
 - ※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실적: ‘21년 12건 → ‘22년 14건 → ‘23년 15건
- (신속 처리) 시군 감사부서 간담회를 통해 단순·반복·경미한 사안은 시군 자체처리 추진,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기본·반복 질문 Q&A 제공
- (여건 조성) 사전 컨설팅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
 - 주요 사전 컨설팅 처리 사안에 대한 사례집 발간(‘23. 4월 200부 배부)
 - 및 사전 컨설팅 감사 활성화 유공 공무원 표창 수여(‘24. 12월 중)

□ 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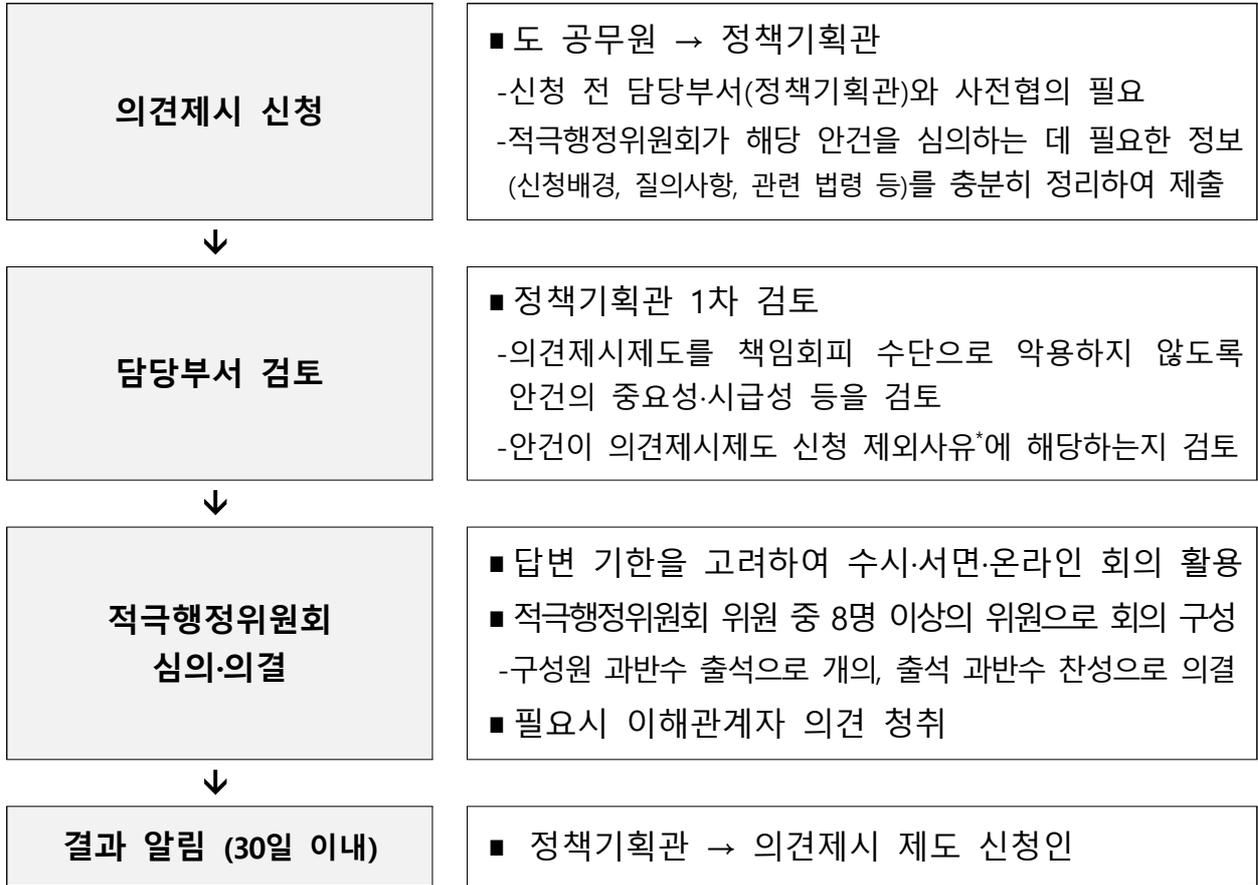
○ (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목적) 전문성있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공무원의 의사결정을 지원
 -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과 병행 운영하여 공무원의 의사결정 지원 창구를 다양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을 중첩하여 보호
- (신청인) 도 소속 공무원
- (대상) 인·허가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업무
 - 특히, 규제개선, 신산업 인·허가 등 개인·부서 단위에서 의사결정이 어려운 과제
- (기대효과) 적극행정위원회는 법리적 해석뿐만 아니라 민간위원과 함께 합목적적 판단까지 가능하므로 정책 수혜자(도민) 관점에서 해결방안 도출 가능
- (효력)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징계요구 등 면책: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 등 면책
 - 징계 등 면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결 등 면제
 - 면책 건의: 의견제시를 받은 공무원이 상급기관 등에서 감사를 받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명의로 면책 건의
- (합동회의) 공무원이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안 중, 2개 이상 기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안전인 경우 합동회의 개최 가능
 - ※ ①타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 ②타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 ③타 기관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등

□ 의견제시 절차



* 신청 제외사유: ①관계법령이 명확한 경우, ②단순 민원 해소 목적인 경우, ③검토가 불충분한 경우, ④이미 처분이 내려진 경우, ⑤감사·수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⑥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 사전컨설팅과 의견제시의 관계

- 사전컨설팅과 의견제시 모두 신청 가능, 한쪽의 답변을 받은 경우에도 다른 분야 신청 가능
- 양측의 결과가 다른 경우 어떤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각각의 법령에 따라 면책 효력 발생

< 의견제시의 건 사례 >

-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직권유예' 의 건**
 [2023. 7. 26. 충청남도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요청 심의]
 ⇒ **건설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직권유예 안건에 대하여 권고사항을 전제로 가결**
 - (권고1) 직권유예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선정하여 추진
 - (권고2) 건설법인 피해 규모에 대한 자료 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

구 분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감사원	중앙부처	자체감사	
근 거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 §5	지자체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5	공공감사법 시행령 §13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12
주 체	적극행정지원담당관	중앙행정기관장	자체감사기구의 장	충청남도 적극행정위원회
신청인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교육감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대상 기관의 장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대 상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이 관련되는 등 자체판단이 어려운 경우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①인·허가 등 규제관련 업무, ②법령해석에 따른 민원업무, ③그 밖에 규제개선 업무	인·허가 등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제외 대상	①민원해소·책임회피 목적의 경우 ②자체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 ③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을 확인하려는 경우 ④감사·수사·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①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②법령의 요건·절차가 명확한 경우 ③판례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④행정제도 및 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일상감사 대상업무 ①주요정책 집행 ②계약업무 ③예산관리 업무 ④그 밖에 중앙행정 기관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업무	①관계법령이 명확한 경우 ②단순 민원 해소 목적의 경우 ③검토가 불충분한 경우 ④이미 처분이 내려진 경우 ⑤감사·수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⑥타 위원회의 심의 결정 사항 등
효 과	징계 요구 등 면책, 징계등 면제	(좌동)	(좌동)	자체감사 징계 요구 등 면책, 징계등 면제
비 고	중요사안은 사전컨설팅 자문 위원회의 에서 안건 심의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 구성	의견제시가 곤란한 경우 상급 감사기구 또는 지원위로 의견 제시 신청 가능	사전컨설팅 내용이 이해관계가 첨여하거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자체감사 기구 요청을 받아 의견제시 가능

가 징계요구 등 면책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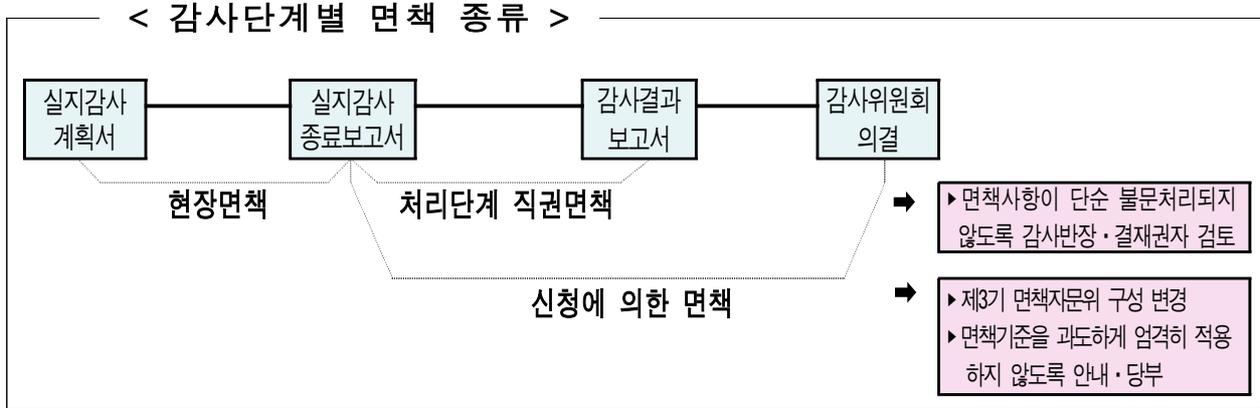
□ 제도 개요

- (근거) 「감사원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 「충청남도 적극행정 면책규정」 등
- (개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각종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등을 제한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 (대상)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 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 대상기관* 및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
 - *①도 분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②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③도지사의 지도·감독 또는 도비를 보조받는 단체·기관, ④시·군, 시·군 소속 기관, 의회사무부서
- (면책기준)

면책요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제외사항 (충청남도 적극행정 면책 규정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p>*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②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 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 처리를 한 경우 ■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사전컨설팅 신청 후 감사원, 자체감사기구의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
 - *①사안이 동일, ②사전컨설팅 시 충분히 정보를 제공, ③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 *①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②위원회 심의 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

○ (면책종류)



구분	내용
신청에 의한 면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감사결과에의 처분지시가 이루어지기 전 ①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결과 피감사자에 대하여 면책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② 피감사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③ 피감사기관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구비하여, → 감사위원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현장면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대상기관은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이 적극행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피감사기관의 감사부서 의견을 첨부하여 현장에서 감사자를 거쳐 감사부서 책임자에게 면책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 감사부서 책임자는 현장 면책요청이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면책결정을 할 수 있음
처리단계 직권면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음

□ 적극행정위원회 면책건의 제도

- (개념) 적극행정위원회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를 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면책을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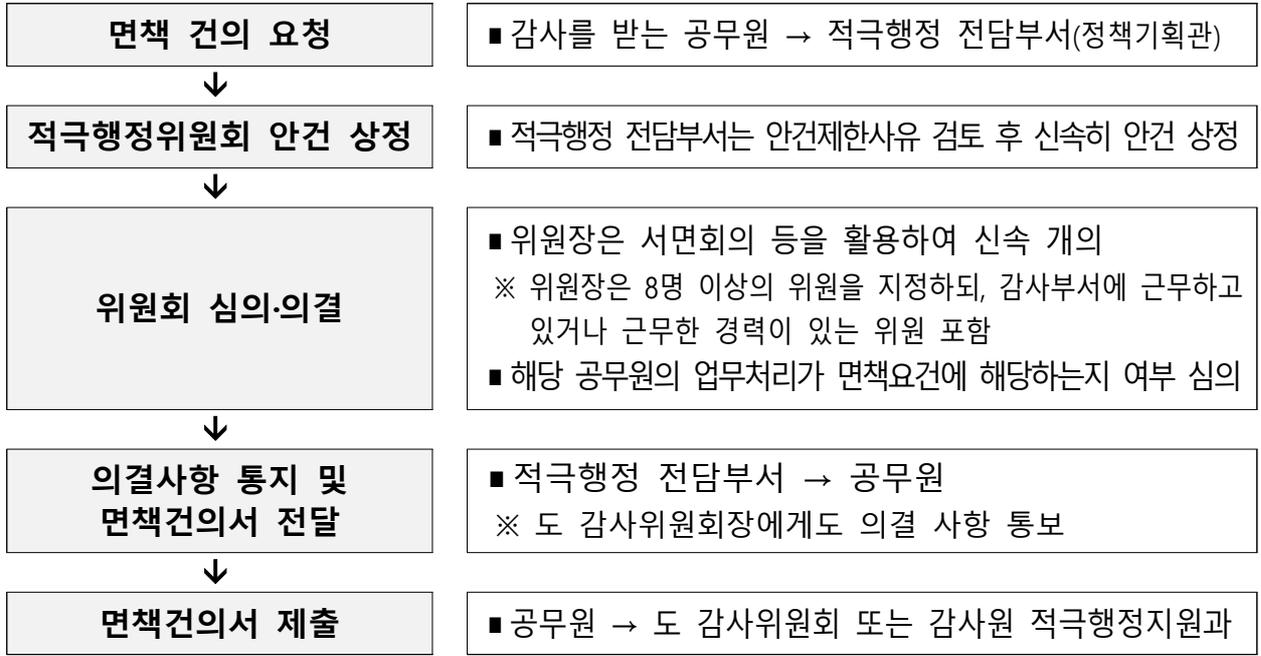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

- (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6항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⑥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

- (건의시점)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양정이 최종 결정되기 전

○ (추진흐름)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 (현장면책 강화)

- 종합감사시 운영, 대상시군별 1건 이상 발굴 의무화 → '24년 목표 5건
- 면책신청 창구 설치 및 현장면책심의회* 운영, 신청 접수·처리 등

* ▶ (구 성) 시군감사팀장 등 5명 / 총괄반장, 반별 감사반장, 상임감사위원
 ▶ (기 능) 현장면책 신청 및 감사관 직권에 의한 면책요청 시 면책여부 결정
 ※ (현장면책 제외) 감사 종료일까지 면책 결정이 어려울 경우 '사전심사' 시 결정, 면책 신청 내용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위원회 상정하여 의결

- 직속기관·사업소 종합감사, 특정감사 및 보조금 감사까지 확대 운영하고 면책 신청시 공공의 이익이 확인되면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면책 적용
- ※ [신청기간] 종합감사 종료일까지(현장면책), 감사위 개최 3일전까지(신청면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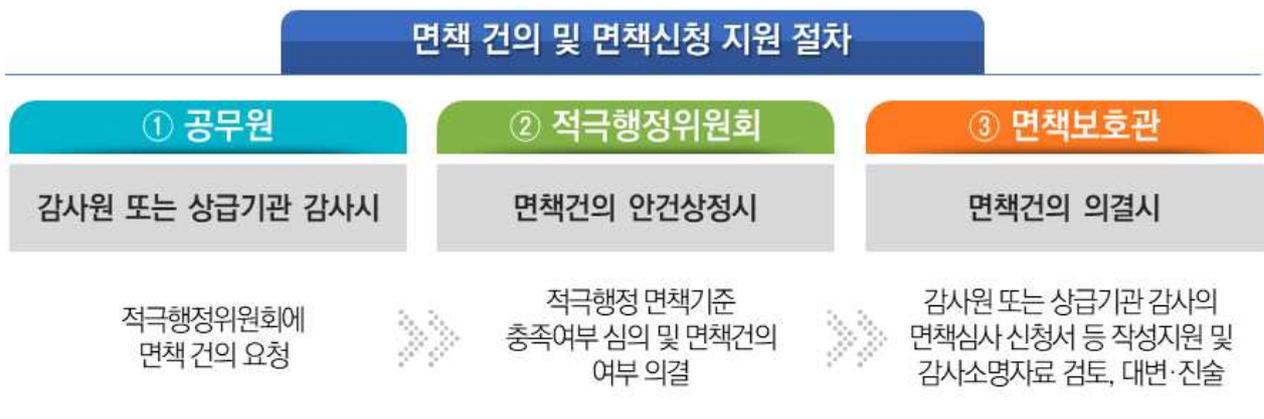
□ 교육 및 홍보 강화

- 공직자 마인드 전환을 위한 교육 추진(감사위원회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 전문성 있는 강사 확보, 면책제도 이해 및 우수 사례 등 공유
- 종합감사 등 실지감사 통보 시 '적극행정 면책 안내문' 발송
 - 시군 게시판(새울행정시스템) 게재 등으로 현장 면책창구 운영사항 홍보
- 적극행정 현장면책 X-배너·홍보 리플릿 등 제작, 현장면책창구내 비치

나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운영

□ 제도 개요

- (목적)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실효성 및 공무원들의 신뢰도 제고
 - 적극행정의 결과로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면책 신청 시,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중립적 입장에서 검토하여 면책 등 지원
- (역할)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신청 및 심사과정 지원
 - 적극행정 공무원의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감사 시 면책 절차·요건, 신청 및 심사 준비 과정 등 상담·지원
 -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에 면책심사 신청서(감사소명자료) 제출 전 자료 검토·자문, 면책심사 과정에 참석 또는 서면 진술
 - 기타 면책제도 안내 및 법률정보 알선 등 다양한 방향으로 지원



□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운영

- (지정) 충청남도 정책기획관* * 적극행정, 규제개혁, 법무행정 담당부서장
- (지원대상)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면책 건의가 심의·의결된 자
 -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면책 건의가 의결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당연 지원
 - ※ 적극행정위원회가 면책 건의를 한 경우에도 자체감사 시에는 지원 불가
- (전문성 강화) 면책 건의 대상 공무원 지원 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 및 충청남도 고문변호사에 자문 요청 가능
- (홍보) 면책제도 홍보시 면책보호관 지정 현황·역할, 지원대상 등 안내

다 징계 등 면제제도

□ 제도 개요

- (개념) 공무원의 적극행정 중 발생한 비위에 대하여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극행정 장려
-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에서 생긴 것으로 인정되는 비위는 감경 가능
- (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 (징계 등 면제제도 근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각 호에 해당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 사전 이해관계가 없을 것,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행안부·도, 자체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 자체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 면제사유 사전검토

- (개념)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시, 해당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징계면제 사유가 있는지 사전에 의무적으로 검토 필수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적극행정 해당 여부 검토 의견을 징계의결 요구시 제출하는 확인서* 서식에 기재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지 서식

□ 적극행정 징계면제 소명절차 구체화 및 심의 의무화

- (개념)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시 '적극행정 징계면제 사유'를 기재하여 소명할 수 있음
- 징계위원회는 징계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심의하고, 결과를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당사자에게 통보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별지 제2호의2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별지 제3호

□ 구상권 행사 제한

- (개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상권 행사를 자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
- (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1항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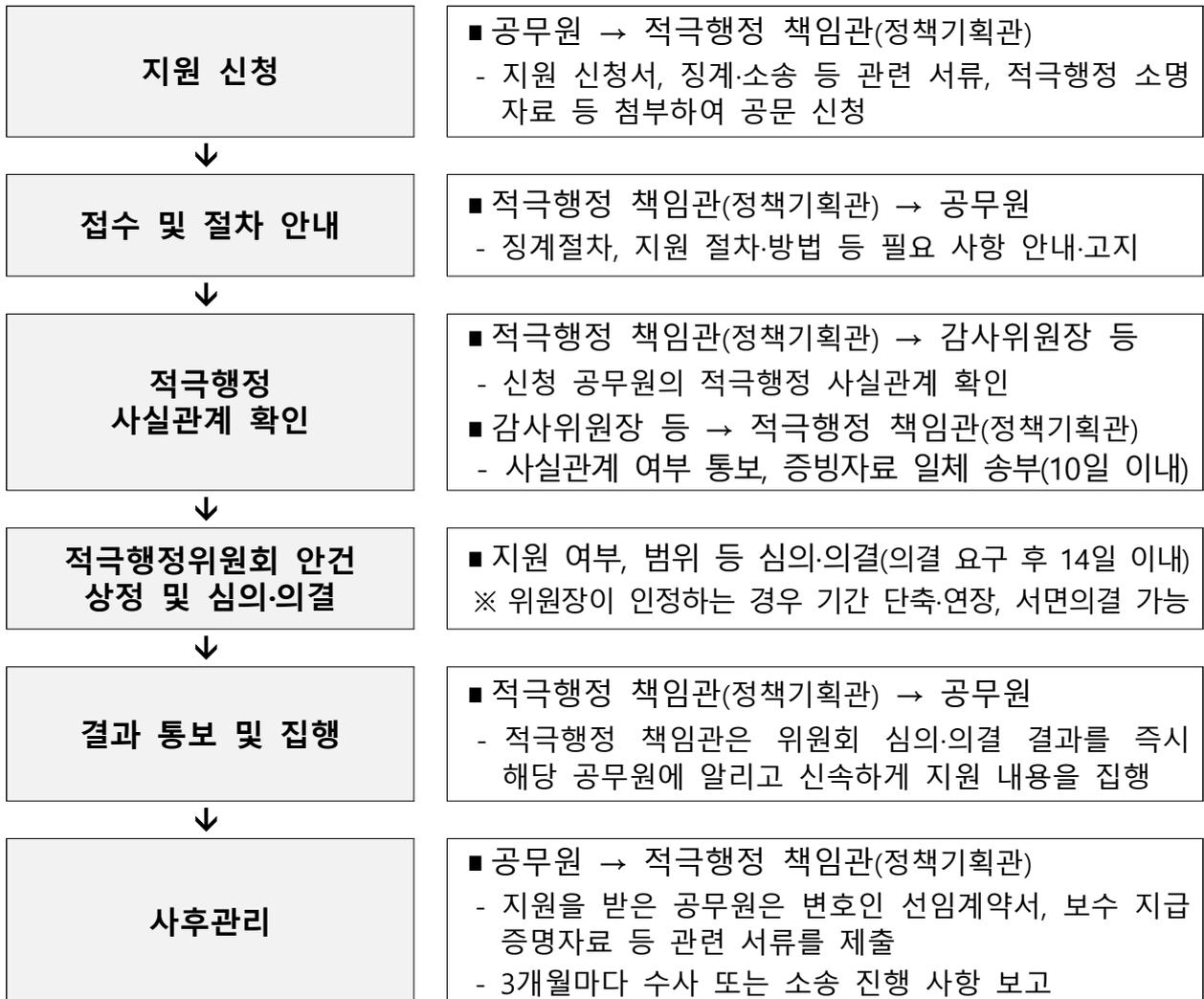
- (개념) 공무원이 적극행정 결과로 인한 민사·형사상 책임 등의 부담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추진
 -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면제요건 충족여부 소명을 위한 변호사 선임 지원
 -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거나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이전 수사단계에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 등 지원
- (근거) 「충청남도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적용범위) 충청남도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
- (지원체계) 적극행정 책임관(정책기획관)과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 ▶ 적극행정 책임관 : 절차 안내, 지원 접수·집행 등 지원 전반 관리
 - ▶ 적극행정위원회 : 적극행정 여부, 지원 여부·시기·범위·방법, 지원 금액 증액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 가능

○ (지원내용)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구분	지원내용
징계의결 등 요구	200만원 이하
고소·고발	500만원 이하 ※ 기소 이전 수사 과정에 한함
민사소송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 적극행정위원회는 사건의 성격,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증액을 심의·의결할 수 있음

○ (지원절차)



○ (지원 취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반환) 관련 규칙에 의거 지원이 취소되거나, 다른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 즉시 반환, 실제 지출보다 지원액이 큰 경우 초과분 반환

□ 행정종합배상 공제

- (개념) 충청남도의 업무수행으로 제3자에게 법률적 손해가 발생 시 배상 관련 비용(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
 -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여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적극행정을 지원
- (지원대상) 도 소속 직원(공무직, 계약직 등 포함)
- (가입기간) 2024.1.1.~2024.12.31. / 1년 단위 갱신
- (운영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상종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방어비용
 -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 내에서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 배상금
 -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급한 비용
 - 방어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또는 조정을 위해 지급한 비용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 피공제자의 고의로 인해 생긴 손해
- 피공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
-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영조물로 인한 손해 (영조물배상으로 보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및 소속 직원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 성범죄, 내란, 횡령, 음주운전, 배임 등 범죄의 피의자·피고인이 된 경우
- 그 밖에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상한도) 민사: 1사고 당 2억원, 연간 10억원 / 형사: 1사고 당 3천만원
※ 보장 횟수 제한 없음 / 고의(민사) 및 유죄(형사)의 경우는 미보장
- (보상절차)



1 소극행정 엄정 조치

□ 제도 개요

- (목적)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여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주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
- (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및 별표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 (조치) 도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비위의 정도, 고의·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계’ 또는 ‘주의·경고’ 조치
 - 악성·상습 사례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정조치
 - 소극행정 시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도 문책(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
- (후속관리)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더 이상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않도록 전보조치하고, 성과평가 불이익 등 인사조치 의무화
 - 소극행정으로 징계 조치 시, 승진 제한기간 6개월 가산(지방공무원 임용령)

□ 소극행정 징계양정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마. 부작위·직무태만(바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4.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 아래의 행위 등으로 인해 ①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②국가 또는 지자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소극행정으로 판단 가능
 - 아래 판단기준은 소극행정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
 -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충분한 조사·심사를 거쳐 적합한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 여부 등을 판단

구 분	정의 및 판단기준(예시)
적당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p>◇ 판단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와 관련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지식·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른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처리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민원인 등과 타협·절충으로 대충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이거나 적법한 사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여 불이행하는 행태 <p>◇ 판단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녹장 대응하는 행태 · 민원신청·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처리하지 않는 행태 ·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탁상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부적법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p>◇ 판단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을 따르거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하는 행태 ·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편익과 공무원 개인 또는 소속기관의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p>◇ 판단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거나 규정·예산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활용함으로써 사적 이익 또는 소속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 2023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 편람, 소극행정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 신고센터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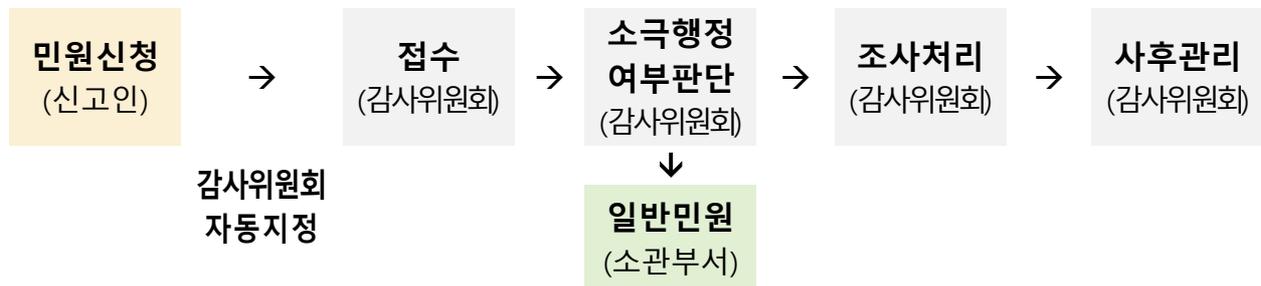
- (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 3

제17조의3(소극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 (운영방법)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신고센터」 상시 운영, 접수된 신고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가 처리하고 신고인에게 결과 통보
 - (처리기준)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처리
 - (전담부서) 도 감사위원회 민원조사팀
 - (유의사항) 소극행정 신고 처리 매뉴얼 등을 준수하여 신중히 답변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 철저
 - 신고자 비밀 누설 시 형사처벌·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 신고 내용에 부패·공익신고가 포함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 비밀보장, 신분보장, 책임 감면 등 신고자 보호 필요
- *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 신고 처리절차



- (신고) 신고인이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소극행정 공무원 신고
- (접수 및 검토) 도 감사위에서 1차적으로 신고를 검토하여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처리,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관부서로 이송
 - ※ 무분별한 소관부서 이송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장 보고·판단

- (조사처리) 조사결과 신고 내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처분 취소·변경, 관련 공무원 징계요구 등 조치 후 신고인에게 통보
- 소극행정 신고는 14일 이내 처리 원칙,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가능,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1차례만 연장 가능

< 종결 및 소관부서 이송 처리 요건 >

【종결처리】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때
-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사항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 이송】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신고인이 기존에 민원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단순한 진정 및 불만의 표시

- (사후관리) 국민신문고에 처리구분 항목(해결, 종결, 취하, 기타 등), 감사위원회 처리여부, 소극행정 해당여부 등을 입력

□ 재신고 제도

- (개념) 소극행정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인이 소극행정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재신고
 - 국민권익위원회는 재신고 사항을 접수·검토 후, 감독기관 또는 소관기관에 재조사 요구, 업무처리 개선 등을 권고
 - ※ 소관기관에 자료제출 요구 가능, 권익위 처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소관기관 감사부서로 이송
 - 소관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부서는 권익위의 의견을 받아 재조사, 개선조치 등 처리 후 권익위 및 신고인에게 결과 통보
 - ※ 권익위에서 별도 의견 없이 재신고를 이송받은 경우 소극행정 신고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 (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 및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 점검 개요

- (목적) 소극행정 특별점검을 통해 공무원의 소극행정 비위를 엄정 조치하고 지적 사례를 시군으로 전파하여 경각심 강화
- (시기) 상·하반기 연 2회 실시 예정
- (대상) 정기감사 대상 시군 및 사업소
 - ※ 전년도 소극행정 점검 및 당해연도 감사원·도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제외
- (점검반) 공직감찰 및 민원조사팀 3~4명 내외(점검반장 : 공직감찰팀장)
- (점검사항) 규제개혁 저해행태, 소극적 행정 행태, 처리지연 행태
 - 규제개혁 저해행태: 부당한 조건 부여로 기업 이익 제한, 법령을 위반한 인·허가 처리, 특정업체에 부당한 특혜제공 및 입찰 참여 기회 제한
 - 소극적 행정행태: 선례답습적 행정처리, 무사안일 및 행정편의적 업무행태
 - 처리지연 행태: 인·허가 등 민원처리 지연, 자치법규 개선 미이행
- (향후조치) 점검결과 부적정 사례 전파 및 처분요구 이행결과 점검 추진

□ 교육 및 홍보 개요

- 상반기 도, 시·군 및 공공기관 직원 대상 **2024년 충청남도 적극행정 교육(2.21. / 既추진)** 시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
 - 소극행정에 따른 신고, 징계 등 실제 사례위주 교육으로 추진
- '24년 도 적극행정 홍보자료* 제작 시 소극행정 예방 안내 관련 내용(소극행정의 개념, 유형별 비위 처리기준 및 사례 등)을 포함
 - * 카드뉴스, 홍보 리플릿, 청사내 E/V 또는 행정 내부망 홍보 등

〔개선〕 道 본청 공무원 대상 교육 → 시·군, 공공기관 임직원 포함 추진

※ MZ세대 공무원이 찾아와 듣고 싶은 강사 선정 및 교육 내용 운영

□ **적극행정 집합교육 《 既 추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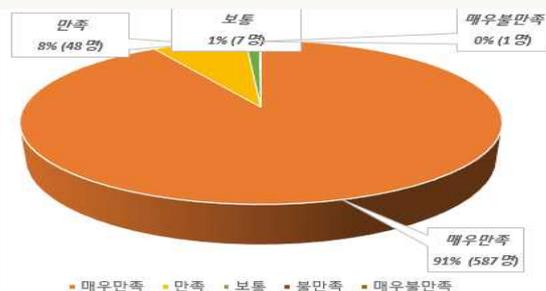
- (목적) 적극행정 교육을 통해 충청남도 소속 직원(시·군, 공공기관 포함)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도내에 확산
- (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8조
- (대상) 도(소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시·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2024년 충청남도 적극행정 교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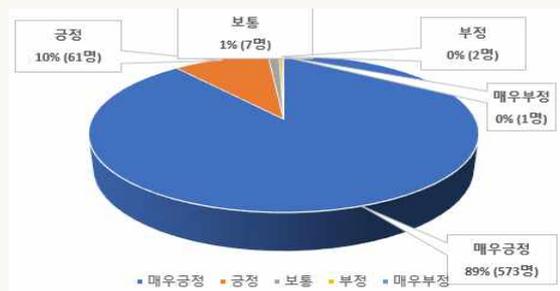
- 때 · 곳 : 2. 21.(수) 14:00 ~ 16:30 / 충남도청 문예회관 대강당(약800명 참석)
- 강의주제 : 청춘이여~열정을 품어라! ※ 징계 등 면책, 소극행정 조치 등 사례소개
- 강 사 : 전한길 교수(現 메가공무원 소속 한국사 강사)

- ✓ MZ세대(신규공무원) 맞춤형 강의를 추진하여 찾아와 듣고 싶은 교육 추진
 - ※ 사전 교육 희망자 약1,500명 → 강의 공간 등 고려 800여명 최종선정 진행
- ✓ 도정 사상 최초로 도, 시군, 공공기관 직원 참여 강의를 진행하여 본청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임직원에게 적극행정의 중요성 강조
- ✓ 인기 스타 강사의 인생경험 및 적극추진 사례 공유로 직원 공감대 극대화
- ✓ 기존 진행했던 보도자료 외, 참여한 강사-직원 스스로 유튜브, SNS, 인스타그램 등에 적극 홍보 진행 → 충남도의 적극행정 관심도 적극 홍보
- ✓ 他 시도, 시·군, 기관 등 적극행정 교육에 대한 문의 쇄도
 - ⇒ 충남도 적극행정의 새로운 변화 및 시도였고 향후 교육 방향 기준 마련
- ▶ 응답자 643명中 635명(98.7%) 교육 만족, 634명(98.6%) 적극행정 동기부여 긍정

《교육 만족도》



《적극행정 동기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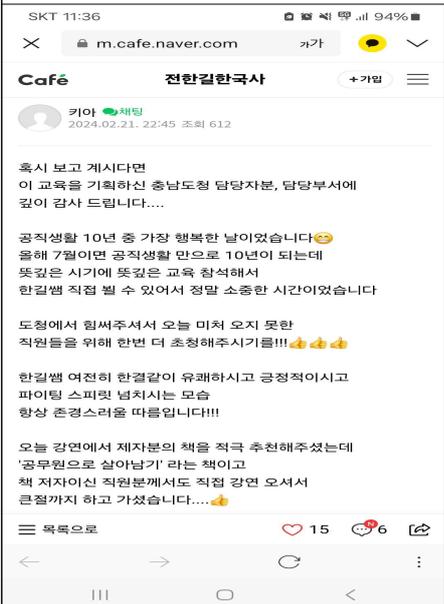


행정부지사님 인사말씀



전한길 교수

교육 전경



제 목 전한길 선생님 강연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낸사람 아산시 [redacted]

받는사람 이재준

보낸날짜 2024-02-22 오전 11:16:13

받은날짜 2024-02-22 오전 11:16:15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시 [redacted] 근무하고 있는 [redacted]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다음이어나라, 어제 문화관에서 "전한길 선생님" 강의를 들었고,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어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강연 기획과 섭외 과정이 매우 수고로우셨을텐데, 직원들을 위해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과거 소극적이었던 자세를 반성하게 되었고 "적극행정" 마인드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주무관님을 포함한 충남도청 정책기획관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직원 만족 관련

□ 인재개발원 집합교육

- (개요) '24년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국·도정핵심교육' 과정에 '규제 혁신과 적극행정(집합교육)' 편성·운영
- (시기) 총 1회(10월)
- (대상) 도 및 시군 공무원
- (교과/시간) 4과목 / 총 2일, 14시간
- (교육내용)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 적극행정 면책 및 지원, 적극 행정 법제 가이드 라인,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의 필요성 및 사례 등
※ 그 외, 신규과정 및 6급 정예과정 內 적극행정 교육 운영 추진

□ 이러닝 과정

- (시기) 상시
- (방법) 도 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사이버교육센터 활용
- (교육과정) 5개 과정
 - 적극행정의 이해, 사례를 통해 배우는 알기 쉬운 적극행정 등
- (목표) 도 현원(2,164명*)의 35%(757명) 이상 수료 목표
*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공무원 인사통계 기준
- (활성화방안) 적극행정 집합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러닝 교육 의무적 이수 추진, 부서별 이수 현황 확인·점검
 - 道 산하기관 임직원이 교육 이수를 할 수 있도록 공문 등 안내 추진

□ 적극행정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 시·군, 공공기관 직원 대상 확대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 교육」

※ '24. 6. 3.(월) / 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 추진 예정

- (대상) 적극행정 전담부서(정책기획관, 도 감사위원회, 시·군 및 공공기관 담당자
- (방법) 국민권익위원회의의 기관 방문 컨설팅 교육 신청 및 수료
- (교육 내용)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개념, 처리방법 및 우수사례,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 및 사례 등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개선] 선발 절차 및 홍보 방법 개선을 통해 영예성 고취(19p 상술)

- (개요) 도, 시군, 공공기관 임직원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해당 사례들을 전국으로 전파
- (일시) 2023년 하반기(8월 예정)
- (절차)
 - [도] ①우수사례(공무원) 선발→②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③도민투표, 지휘부심사, 적극행정위원회 발표심사→④선정 및 포상
 - [시군, 공공기관] ①시군 및 공공기관 제출→②자체 서면심사→③도민투표, 적극행정위원회 발표심사→④선정 및 포상
- (홍보) 카드뉴스, 리플릿 또는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하여 도, 시군, 타 지자체 등에 전파 ※ 연말 우수공무원 인터뷰 영상 제작
 - 도 우수사례는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11월)에 제출

□ 2주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 추천

[개선] 사람 중심 추천→ 우수사례 중심 추천으로 변경 추진중('23.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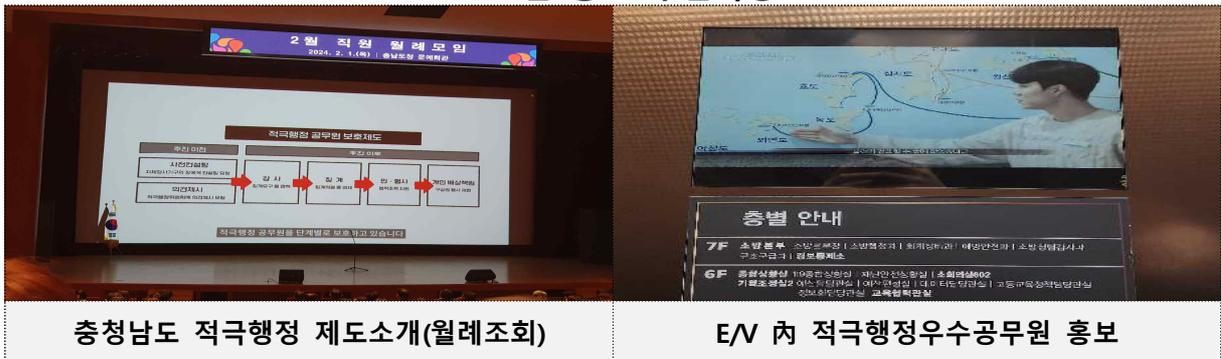
- (목적) 릴레이 추천을 통해 적극행정 우수 수범사례를 발굴하고 전 직원들과 공유하여 도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기여
 - (대상) 도 전직원(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 (선정방법) 격주에 1가지 우수 사례를 릴레이로 추천·선정(2회/月)
 - 사전 대내(직원투표, 지휘부 검토) 및 대외(도민투표) 의견수렴 추진
-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우수공무원 선발 사례
 - ▶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사례
- (인센티브) 도 내부망 메인화면 사례게시 및 부상(3만원 상당) 제공
 - ※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우수공무원 선발 사례의 경우 기 포상 지급으로 부상 미지급

□ 콘텐츠 제작·배포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추진 등에 대한 콘텐츠 제작·홍보로(E/V, 청사 게시판, 포털 등) 참여 관심도 제고

- (목적) 적극행정에 대해 내·외부 홍보를 추진하여 소속 직원들에게는 각종 제도 등을 안내하고 도민들에게는 적극행정 성과 홍보
 - (내용) 적극행정 제도 안내 '24년 충청남도 적극행정 공무원 등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제도, 사전컨설팅, 면책 제도 등 공무원 보호에 관한 제도 내용을 콘텐츠화하여 제도 활용도 증진
 - (유형) 동영상*(적극행정 제도 홍보, 2024년 적극행정 공무원), 카드뉴스, 웹·오프라인 포스터 및 배너, 리플릿, 보도자료 등
 - (매체) 홍보 대상자 맞춤형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 행정 내부망, 청내 전자 게시판 및 배너, 언론보도, 도 누리집 및 유관단체 홈페이지, 도 SNS, 도정신문 등
- ⇒ 금년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 및 경진대회 추진사항을 영상으로 제작·송출하여 관심 유도, 우수사례 선정시 도민(범도민서포터즈 등) 참여

< 2024년 홍보 추진사항 >



충청남도 적극행정 제도소개(월례조회)

E/V 내 적극행정우수공무원 홍보

□ 적극행정 협업 마일리지 제도 운영 검토

[개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협업 마일리지 제도 시범 운영

- (목적) 적극행정·협업 관련 칭찬게시판 운영을 통한 구성원 화합
- (추진) 2024년 하반기(7월 예정)
- (세부계획)
 - 계획수립 및 시범운영(24년) → 행정포털 기능 및 문제점 개선 후 전면 운영(25년)

□ 충청남도 적극행정 모니터링 분과 구성·운영

[개선] 참여자수 확대(9명→25명), 시군별 선발로 홍보 활성화

- (목적) 도와 일반 도민을 연결하는 중간조직으로, 충청남도 적극행정·정부혁신 추진 과정에 수혜자 참여를 높여 도민 체감도 제고
- (운영기간) '24. 4. ~ '25. 11.
- (구성원) 충청남도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중 선발(25명)
 - 범도민정책서포터즈中 희망자 공개접수 → 시군별 인원 선정·운영

< 충청남도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개요 >

- (근거)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원 / 임기) 190명(공개모집 58, 시군추천 132) / '23.12.1. ~ '25.11.30.(2년)
- (역할) 도정 설문조사 등 도민여론 및 의견 수렴, 도민 참여·제안·홍보 추진
- (주요활동) 역량강화 정책토론 워크숍 및 대표자 간담회, 온·오프라인 정책 제안, 권역별 홍보 담당자를 중심으로 SNS를 통한 도정 홍보 지원

- (운영) 대면·서면·온라인 등 방식으로 운영
- (주요활동) 충남 적극행정·정부혁신 운영에 대한 의견 개선 및 참여
 - 충청남도 적극행정 추진 시책(실행계획 수립 및 보완, 적극행정 홍보, 우수사례 및 공무원 선발 등)에 개선 의견 제시
 - 2024년 충청남도 적극행정·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 시 참여
 - 충청남도 적극행정·정부혁신 홍보 자료 도민에게 전파
 -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정부혁신 평가 주민체감도 조사 참여
 - 기타 충청남도 적극행정·정부혁신 추진과 관련된 사항
- (지원) 대면회의시 교통비, 급량비 등 실비 지원, 관련 자료 공유
 -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예산(행사실비지원금 등) 활용
- (인센티브) 우수 활동가에게 연말 도지사 표창 수여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 (개념) 국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신청하는 것
 -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 기존 적극행정 지원제도는 공무원만을 신청주체로 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추진에 한계, 도민의 제도활용 및 정책참여 필요성 대두
- (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신청요건 및 제외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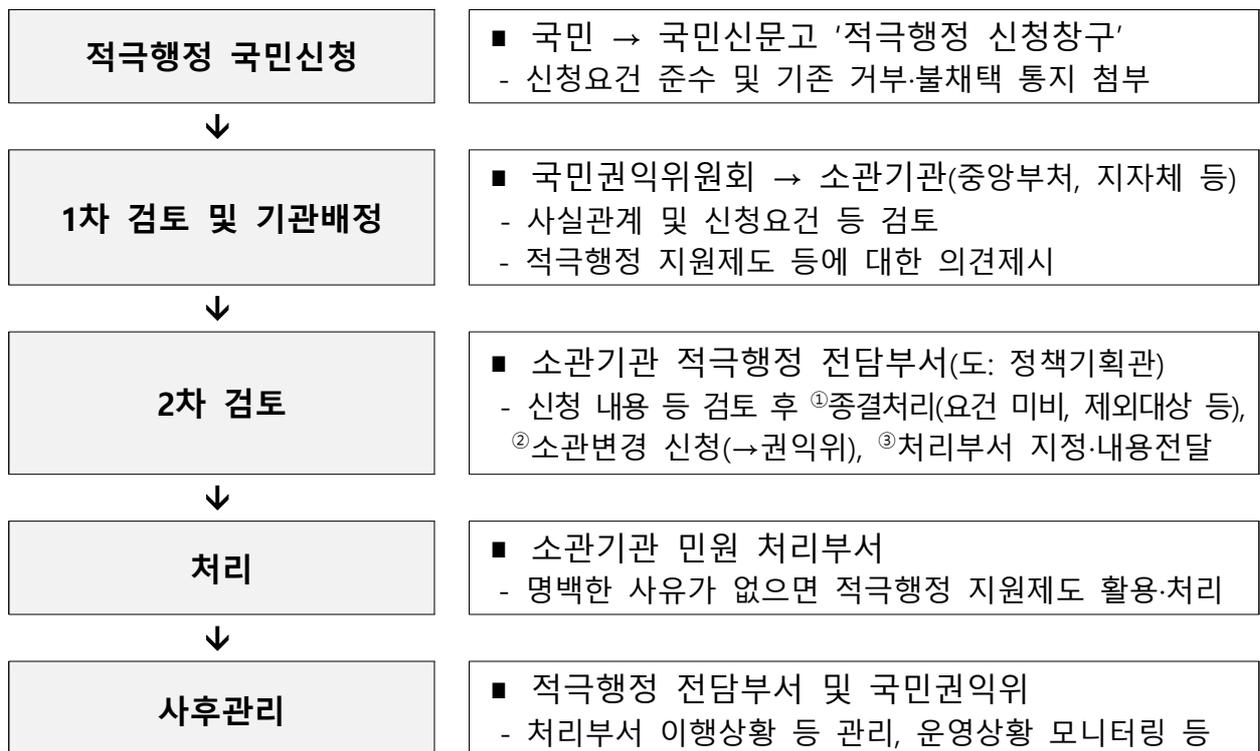
【신청요건】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 민원 또는 국민제안 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반려된 사안
- ①법령미비, ②법령 불명확, ③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거부 또는 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안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
- 사인간 권리관계,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 단순 질의, 진정, 불만, 민원인 경우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과 연관된 경우
- 공무원의 인사행정상 행위에 관한 사항
- 판결·재결·등으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 (추진흐름)



□ 적극행정 국민추천제도

- (개념) 국민이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을 직접 칭찬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추천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동기를 부여
- (추천대상)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한 공무원 또는 정책사례
 - 단순히 친절하게 민원에 대응한 사례나 공익에 맞지 않는 사례 등은 소관부서 판단하에 추천대상에서 제외
- (추천방법) 도민들이 충청남도 누리집*이나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ON 사이트의 '적극행정 국민추천' 페이지에서 직접 추천
 - * 도 누리집 → 소통 → 제안/정책토론 → 적극행정 → 적극행정 국민 추천
- (인센티브) 적극행정 공무원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 가점 부여, 추천사례 요약 홍보물 제작하여 공유·홍보 등
 - 추천사유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타당성 논의

< 2023년 적극행정 국민추천 관련 >

<균형발전정책과 강○○>

(사례) 환경영향평가 초안 생략 협의 추진으로 인허가 기간 단축

(내용)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금강유역환경청과 적극 협의하여 최초로 생략, 인허가 기간을 약60일 단축하여 추진

<균형발전정책과 이○○>

(사례) 스마트도시 시책사업의 발굴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대응체계 마련

(내용) 도 15개 시군 스마트 도시 수요에 대응한 선제 계획 수립, 2023년 국토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시 공모계획안 작성 지원 등을 통해 도 기초지자체 선정에 노력(3개 시군 선정)

□ 도민 참여·소통 활성화

- 도 적극행정 시책 추진 과정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 도민체감도 강화
 -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 국민·도민 소통 플랫폼*을 활용하여 참여 확대 * 소통24, 충남서로e음
 - 도 SNS를 활용하여 적극행정 추진현황 및 사례 적극 홍보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시, 적극행정 모니터링 분과 등 적극 활용

1 실행계획 수립 추진일정

- '24년 적극행정 운영지침 유관부서 공유 및 실행계획 수립 협조 요청
- '24년 충청남도 적극행정 실행계획 전담부서(정책기획관)의 초안 작성 및 유관부서 확인·의견수렴('24.4.)
- 도 적극행정위원회에 실행계획(안) 안건 상정, 대면심의·의결('24.5.)
- 최종 실행계획 결재* 및 도 전 부서 배포('24.5.)

* 유관 팀장(법무, 인사, 서무, 감사, 교육 등) 협조, 행정부지사 전결 추진

2 과제별 추진일정

추진 전략 및 과제	시기	주관부서
1. 도지사가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1-1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연중	정책기획관
- 적극행정 추진단 운영	수시	정책기획관
1-2 시군 및 공공기관 적극행정 활성화	연중	정책기획관
- 공공기관 적극행정 제도 마련 요청	8월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 적극행정 우수기관 포상	12월	정책기획관
1-3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4월	정책기획관
- 적극행정 실행계획 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분기별	정책기획관
1-4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지원	5월~	정책기획관
- 적극행정 중점과제 추진상황 점검	분기별	정책기획관
1-5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정기	정책기획관
- 도 적극행정위원회의 공공기관 적극행정 사항 대행	연중	정책기획관
- 적극행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연중	정책기획관
2.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2-1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8~9월	정책기획관
2-2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	6월, 8월, 12월	정책기획관
2-3 규제혁신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	12월	정책기획관
2-4 적극행정 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반기별	인사담당관

추진 전략 및 과제	시기	주관부서
3.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3-1 사전컨설팅 활성화	연중	감사위원회
-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감사	분기별	감사위원회
3-2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운영	연중	정책기획관
3-3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연중	감사위원회
- 적극행정 현장 면책제도 운영	7월, 9월, 12월	감사위원회
-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운영	연중	정책기획관
3-4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수행 등 지원	연중	정책기획관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연중	정책기획관
4.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4-1 소극행정 엄정 조치	연중	감사위원회, 인사담당관
4-2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연중	감사위원회
4-3 소극행정 점검	반기별	감사위원회
4-4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연중	정책기획관
5.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5-1 소속직원의 인식·행태 개선 교육	연중	정책기획관
-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직장교육 실시	2월	정책기획관
-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운영	연중	인재개발원
- 적극행정 이러닝 과정 운영	4~12월	인재개발원
5-2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연중	정책기획관
- 2주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 추천	격주	정책기획관
- 적극행정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	연중	정책기획관
5-3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민 참여·소통 강화	연중	정책기획관
- 충청남도 적극행정 도민 모니터단 구성·운영	4월~	정책기획관

3 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 (시기) 분기별 1회 ※ 7월, 10월, 12월 / 도 공공기관은 반기별(6월, 11월)
- (대상) '24년 충청남도 적극행정 실행계획 5개 분야 20개 과제
 - 시군의 경우 자체 점검을 요청하고, 도 공공기관의 경우 적극행정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적극행정 제도 운영 현황 등 점검
- (방법) 주요 과제별 이행현황을 서면 점검하되, 필요시 현장점검 병행